제 안 요 청 서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 방안 연구)

2026. 2.

산 업 통 상 부
유 통 물 류 과

목 차

1. 목적 ····· 1

2. 과업 개요 ····· 1

3. 수행 방안 ····· 2

4. 추진 일정 ····· 4

5. 낙찰자 선정방법 ····· 4

6. 제안 안내 ····· 5

7. 제안서 작성방법 ····· 6

1. 목적

가. 유통산업 전문가 포럼 등 구성·운영

○ 유통산업은 업태간 변화가 심하며 대·중소 유통업계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의견청취가 중요

- 유통산업 최근 이슈 및 유통법 개정 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유통산업의 이해도 제고

○ 글로벌 유통산업 동향 파악 및 우리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나.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전통시장 등과 유통기업 및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여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제시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유통협력 상생협력 증진 방안 연구

나. 용역예산 : 금칠천일백만원(71,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다. 연구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 연구기간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단「국가계약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마. 업체선정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수행방안

가. 과업의 수행내용

○ **유통산업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

-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업계·학계·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현안에 따라 자문회의 등 개최

- 유통법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자문

* 유통법 전문가 자문회의, 법 개정 공청회, 법률자문 등

- 해외 유통산업 전문가 초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포럼 전반에 관한 기획 수립·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연사 섭외 등

- 전국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설명회 개최

○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유통산업 상생협력 사례 발굴

* 모집·신청, 심사 및 선정(유통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우수 협력사례 포상 및 홍보

* 유통 상생분야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홍보, 상생 홈페이지 게시 등 운영

나. 기타 고려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기본자료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추진일정

○ '26.2월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26.2월~12월 : 과업 수행

○ '26.12월 : 결과 보고 및 결과 평가 진행

* 과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자와 과업수행자의 협의로 일정안 조정 가능

5.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80%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로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 가격이 본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제안자(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하며, 이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6. 제안 안내

가. 제안 대상 과제

○ 과 제 명 :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 방안 연구

○ 소요예산 : 금칠천일백만원(71,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나.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고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고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고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산업통상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본 규격서에 대하여 본문은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이나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임4에 기술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목차대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제안서 구성 및 세부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안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부와 제안사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다만, 산업통상부와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산업통상부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도면 제외)는 중앙 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서식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	세부사업계획서

[붙임 2]

주요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및 학위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전광 학위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용 역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세부사업계획서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

Ⅱ. 연구관련사항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용역의 목표
3. 연구용역의 내용
4.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 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업무 분담 내용 및 추진방법**

5. 연구용역의 수행체계

*** 전문가, 업계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6.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진

ㅇ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연구참여분야 명시

[붙임 5]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 업 통 상 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붙임 5-1] 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붙임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 납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 ○(기관명)

○ ○ ○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붙임 7]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무역·기술안보 연구회」**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

□□□□ 대표 0 0 0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붙임 9]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30)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5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5
	사업 수행 계획(30)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15)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연구방법의 타당성	15
	재무구조 . 경영상태(5)	ㅇ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